

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 실행방안

구 분	조치사항	
기 간	▶ 2021. 04. 12. 00시 ~ 05. 02. 24시 (3주간)	
안내사항	▶ 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내용확인 ① 방역수칙 준수(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)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③ 출입자명부 작성(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체크인) 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(식당 등 제외) ⑥ 손씻기(손소독제 비치 등) 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⑧ 환기하기(환기대장) ⑨ 소독하기(소독대장) 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	
사적모임	▶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, ③ 영유아(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전문점	
기타 모임·행사	▶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약 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는 100명 미만 인원제한 ※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기타시설 참조	
스포츠 관람	▶ 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30%이내)	
국공립시설	▶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, 그 외 시설은 50%로 제한 - 다만,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	
중점 관리 시설	유흥시설 5종 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	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 <클럽, 나이트> 춤추기 금지 및 안내 <감성주점>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<헌팅포차>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<단란주점> 춤추기 금지 및 안내 <콜라텍, 무도장> 상대방(파트너)과의 신체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<홀덤펍>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어 앉기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	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	노래 연습장	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등
	실내 공연장	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공연장 밖 로비(대표·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 ▶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,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
	식당 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 ▶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▶ 공용접개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파티룸	▶ 이용인원 제한(개별방 면적 8㎡당 1명) ▶ 공용접개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▶ 부대시설 등에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
구 분	조치사항
일반 관리 시설	결혼식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뷔페,식당 이용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(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)
	장례식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
	목욕장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이용자 발열체크, 증상관련 안내판 게시 및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▶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권고) 및 안내판 게시 ▶ 달 목욕(정기이용권) 신규발급 중지, 이용자 공용물품 사용금지, 사적대화 금지
	영화관 공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[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앉기(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)] ▶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▶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,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
	PC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[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]
	오락실 멀티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실내 체육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고강도 유산소 중심, GX류, 체육도장, 중·저강도 운동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	스포츠경기 (관람)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 관객의 30% 이내 입장) ▶ 식당 등 부대시설은 각 시설 방역수칙 준수, 음식 섭취 가능 구역에서만 섭취
	실외체육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)
	학원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) ▶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 ▶ 학원,교습소,직업훈련기관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독서실 스터디카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[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,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 50%)] 	
유원시설 (놀이공원 워터파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 인원의 50%) 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▶ 놀이공원, 워터파크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	
이미용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) 	
백화점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백화점·대형마트,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	
돌자치 전문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허가면적 5㎡이상) 	
기타 시설	숙박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행사,파티 등 주최 금지 ▶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및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 ▶ 콘도,리조트,호텔 및 민박,펜션,게스트하우스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	종교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▶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※ 수련회,기도회,부흥회,구역예배,심방,성경공부 모임,성가대 연습모임,각종 선교소모임 및 교육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

구 분		조치사항
	기타시설	<p><카지노, 경륜, 경마, 경정> 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)</p> <p><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>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</p> <p>▶ 카지노, 경륜·경정·경마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, 키즈카페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, 안마소, 국제회의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</p>
고위험시설	콜센터	<p>▶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p>
	유통물류센터	<p>▶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p> <p>▶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</p>
	화투방	<p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</p> <p>▶ 출입자 명부관리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</p> <p>▶ 음식 섭취 금지 (물, 무알콜 음료는 허용)</p>
	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	<p>▶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- 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(영상면회 등)만 허용 - 요양병원·시설 비접촉 및 제한적 접촉방문면회 실시 <p>(제한적 접촉방문면회) 임종시기, 중증환자,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해 면회객의 진단검사(PCR 또는 신속항원검사) 음성 확인 및 보호용구 착용하는 경우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로당 휴관
	대중교통시설	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
	사업장	▶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(사업장 방역수칙) 준수
	등 교	▶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
직장근무	공 공	<p>▶ 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화식회회는 취소 또는 연기,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
	민 간	<p>▶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